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94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 강대식 · 송언석 · 정동만

이종배 • 유용원 • 조지연

강선영 · 강승규 · 김용태

김예지 · 최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①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이수시간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 교육 이수 및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전시특례) ① ~ ⑥ (생	제83조(전시특례)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
	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
	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ㆍ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
	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
	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
	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
	게 요구할 수 있다.
<u>⑦</u> (생 략)	<u>⑨</u> (현행 제7항과 같음)
<u><신 설></u>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이수시간 및 절차, 제7

항에 따른 조치, 제8항에 따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